

의안번호	제 25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4월 11일

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

의안
번호

253

제출연월일 : 2023년 4월 1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치아교정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* 본인의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강화
 - 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
- 他 의료지원제도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아교정 지원을 통해 부정교합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, 치주질환 등 사전예방 및 폭넓은 의료선택 기회 제공

2. 주요내용

- 사업내용 : 금융기관(농협)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,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
- 채권자 : NH농협은행(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)
- 주채무자 : 의료비후불제 융자금을 받은 도민
 - (현행) 65세 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
 - (변경) 65세 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조례 상 지원대상
- 융자금액 : 25억원(농협정책자금)
- 융자조건 : 1인 300만원 한도 / 3년 무이자 분할상환
- 보증기간 :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
- 보증범위 :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
(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)

3. 참고사항

- 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 확대 계획(안)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기타 : 해당없음

필요성

- 의료비후불제 사업 확대로 더 많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하고 질병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

사업개요

- 사업시행 : '23. 1. 9.
- 참여병원 : 133개소(종합병원급 12, 병원급 9, 치과의원 112)
- 대상수술 : 임플란트, 슬고관절 인공관절 착추, 심뇌혈관 차야교정 수술(시술)
- 사업대상 확대(안)

현행
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
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
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
④ 국가유공자(6,501명)
⑤ 장애인(47,012명)



확대(안) * 중복제거
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
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
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
④ 국가유공자(6,501명)
⑤ 장애인(47,012명)
※ 차야교정의 경우, 의료취약계층(②,③,④,⑤)의 자녀까지 지원

- 사업비 : 2,500백만원(농협 정책자금)
- 도비소요액 : 923백만원(농협 정책자금 이자^{연6%} 및 미상환금 보전^{미상환율 30%})
- 사업량 : 830명^(최소)~5,000명^(최대)
- 지원내용 : 최대 3년간 무이자 융자(대출) ※ 1인당 50 ~ 300만원

<치야교정 사업 >

- ❖ 지원대상 : 취약계층 본인 및 자녀
- ❖ 지원금액 : 후불제(300만원) + 교정비 지원금*(200만원)
* 교정비 지원금 : 고향사랑기부금 + 치과 기부금 + 공동모금회·적십자사 자체예산
- ❖ 참여병원 : 29개소
- ❖ 주요내용 : 의료비후불제 및 교정비 지원금 활용 치야교정 실시

□ 추진상황

- 의료비 후불제 TF팀 구성 : '22.07.
-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및 회의(4회) : '22.08~10
- 충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완료 : '22.09.
- 참여기관(의료기관, 농협 등) 간담회 : '22.10.
-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: '22.10.
-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(보건복지부) : '22.10.
- 도의회 채무보증 동의안, 조례제정안 의결 : '22.12.
- 시범사업 운영지침 수립 : '22.12.
- 의료비후불제 참여기관 협약 : '22.12.
-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: '23.01.
- 의료비후불제 민원대응반 운영 : '23.01~02
- 의료비후불제 용자 지원범위 확대(재활치료비, 간병비 등) : '23.01.
-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격 확대(65세 이상 및 취약계층 연령제한 폐지) : '23.02.
- 의료비후불제 참여병원 지속 확대(병원급¹⁰⁰병상 이상 의료기관 등) : '23.02~

□ 기대효과

- 적기 질병치료를 통한 삶의 질 향상(영양공급 및 사회적정서적 안정 등) 및 기대수명 연장 제고
- 지원받은 의료비를 상환하여 다른 어려운 도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(善循環)적 의료복지제도 정착

□ 향후계획

- 의료비후불제 사업 치아교정 세부 운영지침 마련
- 이통장, 읍면동 복지팀, 경로당 강사 등 활용 대면홍보 강화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(이하 “주채무”라 한다)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□ 「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」

제3조(채무보증의 승인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충청북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」

제5조(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) ①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용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2.1.>

1. 65세 이상인 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5.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의료비 용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의 적정성,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, 사업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③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(채무보증)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용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용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「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」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.